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7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7.

발 의 자:최혜영・이상헌・김회재

윤재갑 • 남인순 • 이용빈

신현영 • 이광재 • 주철현

고영인 · 최종윤 · 정춘숙

인재근 • 박성준 • 서영석

박완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비허가 스텐트를 정상 허가받은 완제품 포장박스에 넣어 의료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었음. 식품 · 의약품분야는 봉함한 완제품을 개봉하여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,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의무·개봉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, 의료기기 개봉판매를 금지하고, 인체 삽입 의료기기, 개봉 시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·수입업자에게 봉함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제조·수입 시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양질의 의료기기만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기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, 제25조의2, 제36조,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).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4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개봉 판매 금지) 누구든지 제2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.

제4장제2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의2(봉함)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(封緘)하여야 한다.
 - 1.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
- 2.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제3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4호의2를 제14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1의2.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경우

14의2.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

제53조의2 중 "제10조제5항,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결과보고서,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0조제5항,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보고서,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거짓으 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
- 2.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

제54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않고 판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개봉 판매 금지) 누구
	든지 제25조의2에 따라 의료기
	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
	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
	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.
<u><신 설></u>	제25조의2(봉함) 의료기기 제조업
	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
	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
	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
	여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
	용기나 포장을 봉함(封緘)하여
	<u>야 한다.</u>
	1.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
	2.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
	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
	의료기기
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	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 등) ① 제조업자등이 다	정지 등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・수	
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	

안전처장이, 수리업자 · 판매업 자 ·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·수 입・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· 제22호 및 제23호 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 야 하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12. ~ 14. (생 략) <신 설>

14의2. (생략)

15. ~ 24. (생략) ② ~ ⑤ (생 략) 제53조의2(벌칙) 제10조제5항, 제 제53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

1. ~ 11. (현행과 같음) 11의2.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 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경우 12. ~ 14. (현행과 같음) 14의2.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 함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4의3. (현행 제14호의2와 같 유)

15. ~ 2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제4 항에 따른 임상시험결과보고서,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관 리심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54조의2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(생략)

<u>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	

- 1. 제10조제5항, 제10조의2제3 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결과보고서, 비임상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관리심 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 는 발급한 자
- 2.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개봉하여 판매한 자

제54조의2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

 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

 지 않고 판매한 자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